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

□ 심사 기준 근거

- 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
-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 등에 관한 지침
- 위 규정, 시행세칙 및 지침에 따라 심의를 거친 세부 기준

I 심사 절차

1.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절차 (시행세칙 제4조)

제 4 조(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절차)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아래 교무과에서 구비서류 충족여부를 「서류심사조서」에 의해 심사한다.
- ② 기초심사(15점)는 심사위원 5인(학내 교수 3명, 외부전문가 2명)을 총장이 위촉하여 실시하며, 기초심사 위원은 교수신규 채용 「기초심사 평정표」에 의해 심사 후 교무과에 제출하며,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인의 평균점수를 개인별 점수로 한다. 합산 평균점수가 11.5점 이상인 자를 가(可)로 판정한다.
- ③ 전공심사(75점)는 전공심사 I(서류심사, 60점)과 전공심사 II(공개강좌, 15점)로 각각 구분하여 단계별 심사위원 5인(학내 교수 3명, 외부전문가 2명)을 총장이 위촉하여 실시한다.
 1. 전공심사 I(서류심사)는 기초심사에서 가(可)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심사위원은 교수 신규채용 「전공심사평정표」에 의해 심사하여 교무과로 제출하며, 평가항목(연구실적)의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로 한다.
 2. 전공심사 II(공개강좌)는 기초심사와 전공심사 I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배수 이내인 자에 한하여 심사하되, 심사위원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로 한다.
- ④ 면접심사(10점)는 면접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전체 면접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4명의 평균 점수를 개인별 점수로 하며, 6점 이상인 사람을 가(可)로 판정한다.

- ⑤ 심사단계별 심사위원 결원 시 점수계산은 3인 평가 시 평균, 4인 평가 시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합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⑥ 합격자 결정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하되, 면접심사에서 가(可)로 판정된 자에 한한다.
- ⑦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 채용에 관한 세부절차 및 심사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⑧ 각 심사항목에 대해 최하점을 부여하였을 경우 최하점 부여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심사 위원은 총점 11.5점 미만 부여 시 부(不)판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 실적물 기준 (지침 제4조)

제4조(연구실적물 및 경력) ① 시행세칙 제5조의2제2항제3호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중 학술지 게재 논문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 기간은 규정 제8조제1항을 따르되, 인정 기간 시작일은 해당 월의 초일로 정한다.
2. 권(호), 페이지, 발행월(일), 연도가 부여되어 출판 완료된 실적물만 인정한다.
3. 인쇄물과 Web으로 함께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은 먼저 게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Web으로만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은 권(Volume)과 게재일자(Publication Date)가 명시되어야 한다.
5. 게재예정 실적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6. 국제저명학술지의 임팩트팩터는 지원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경력사항은 전공과 관련한 주요 경력을 5개 이내로 인정하며, 이를 심사위원 참조 자료로 활용한다.

3. 서류심사 및 기초심사 (시행세칙 제5조 등)

○ 시행세칙 제5조

제 5 조(서류 및 기초심사) ① 서류심사는 교수 채용 공고에 의한 자격여부, 연구 실적물 충족여부, 구비서류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되, 가(可) 또는 부(否)로 판정한다. 다만, 외국 학위 중 석·박사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학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② 기초심사는 기초심사평정표에 따라 항목별로 심사하여 합산점수 11.5점 이상인 사람만 가(可)로 판정하되,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상위 10배수, 2명 이상인 경우 7배수 이내인 사람에 한하여 전공심사 I 을 실시하며, 학사, 석사, 박사 출신학과(전공) 부합도는 교무처

장 주관하에 1차 평정한 후, 평정표에 따라 2차 심사하며 항목별 배점과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종 학위논문의 일치도: 5점(80%이상 일치: 5점, 60%이상일치: 4점, 40%이상 일치: 3점, 20%이상 일치: 2점, 20%미만일치: 1점)
2. 학사, 석사, 박사 출신학과(전공)부합도: 5점(학사부합: 1점, 석사부합: 2점, 박사부합: 2점, 석박사 통합과정 부합: 4점) 다만, 부합도 비율에 따라 학사부합도는 1점, 0.5점, 0점, 석사부합도는 2점, 1점, 0.5점, 박사부합도는 2점, 1점, 0.5점, 석박사 통합과정 부합도는 4점, 2점, 1점으로 한다.
3. 연구논문 일치도: 5점(80%이상일치: 5점, 60%이상 일치: 4점, 40%이상 일치: 3점, 40%미만 일치: 2점)
 - ③ 예능계열 지원자가 제2항제1호의 최종 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해당 학위과정의 재학기간 중 발표한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한 실적은 다른 심사에 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 ④ 총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점수 외에 2점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⑤ 지원자가 연구윤리위반 또는 이전 소속기관의 징계 등 이력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점수 결과에서 2점을 감점한다.

○ 지침 제6조

제6조(기초심사) ①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기초심사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행세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초심사 중 교무처장 주관 하에 실시하는 전공부합도 1차 평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당해연도 대교협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에 의하여 일치여부를 판정하여 아래의 평정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출신학과(전공) 부합도 평정기준표 >

구 분	학사 부합	석사 부합	박사 부합
소계열 일치	1	2	2
중계열 일치	1	1	1
대계열 일치	0.5	0.5	0.5

2. 모집학과와 지원자의 출신학과 또는 전공을 비교하여 둘 중 하나 이상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며, 학위과정의 구분은 지원자가 입력한 것을 기초로 하되, 명백한 오류의 경우에

만 수정 적용한다.

3. 학부의 경우는 출신학과명만 비교하되, 음악과의 경우에는 악기를 전공으로 간주하여 비교할 수 있다.
 4. 분류표 중 목록에 없거나, 외국 학과, 전공 등 불분명하여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일치로 판정한다.
 - 가. 학과명 또는 전공명이 모집학과명의 특성을 표현하는 핵심단어와 1개 이상 일치하는 경우
 - 나. 패션, 의류, 의복, 의상, 음악의 경우 개별악기의 이름 등 의미상으로 동일하다고 해석되는 경우
 5. 이 외 점수 부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판단에 따른다.
- ③ 시행세칙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수 부여를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전공심사 | (서류심사) (시행세칙 제5조의 2)

가.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 최초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제 5 조의2(전공심사)

② 연구실적(60점) 세부심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최우수학술지: 제나목의 학술지 중 임팩트팩터가 30 이상인 경우

나. 국제전문학술지1: SCIE, A&HCI, SSCI, Index Medicus. 다만, 임팩트팩터가 없는 경우 인정 안함.

다. 국제전문학술지2: SCOPUS

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마. 인문사회계열에 한하여 전공저서 및 번역서(ISBN등재, 다만, 개정판·증보판 제외)는 각 1편만 인정

바. 예술·체육계열 [예술·체육계열 연구자 수 반영률 및 점수 기준표]와 같이 정함.

사. 이공계열에 한하여 특허 2건까지 인정. 다만, 국제특허는 미국, 유럽, 일본만 인정하며, 특허와 관련된 논문 제출 시 불인정

아. 학술논문인 연구실적물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

나. 전공심사 I 항목별 심사기준 및 배점

1) 전공심사 I 평정 항목 및 심사 대상

제 5 조의2(전공심사) ① 전공심사는 각 전공심사평정표에 의거 심사하고 기초심사 점수와 전공심사 I(서류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배수 이내의 자에 한하여 전공심사II(공개강좌)를 계속한다.

1. 전공심사 I 평정은 다음 사항을 서류로 심사한다.

가. 연구실적: 60점을 질적심사(50점)와 양적심사(10점)로 별도 구분하고, 질적심사(300%)와 양적심사(600%)에 대하여 심사하되, 질적심사 대상은 논문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정하고, 저서 및 번역서는 1인 저자에 한정.(다만, 예술·체육계열은 [예술·체육계열 연구자 수 반영률 및 점수 기준표]와 같이 정한다)

② 연구실적(60점) 세부심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양적심사 대상: 모집분야와 일치하는 최근 5년 이내(최초 공고일 기준)의 실적물 중 600%를 질적심사를 위한 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되, 불가피하게 600%를 초과한 실적물이 포함될 경우 해당 실적물 인정 비율을 600%까지 맞추어 인정. 300% 미만 제출자 또는 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제2항의 연구실적 최소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최초 공고일 현재 출판된 논문은 인정하고 모집분야와 일치도를 평가. 치의학과는 임상계열에 한정하여 공고일 현재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은 200%, 석사학위 논문은 100%로 인정. (다만, 예술·체육계열은 [예술·체육계열 연구자 수 반영률 및 점수 기준표]와 같이 정함.)

2. 질적심사 대상: 지원자가 기재한 심사우선 순위에 따라 300%까지 질적심사에 포함시키되, 불가피하게 300%를 초과한 실적물이 포함될 경우 해당실적물의 인정비율을 300%까지 맞추어 인정한다

2) 연구실적 점수

제 5 조의2(전공심사)

② 연구실적(60점) 세부심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9.>

4. 연구실적점수:

- 질적점수(50점) 산출공식은 $\sum\{(\text{연구자수 반영률}) \times (\text{학술지 반영점수}) \times (\text{연구실적물의 질 계수}) \times (\text{연구실적의 채용분야 일치도})\}$ 로 하며,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양적심사(10점) 산출공식은 $\sum\{10\text{점} \times (\text{제출실적물의 연구자수 반영백분율}/600\%) \times (\text{연구실적물의 채용분야 일치도})\}$ 로 한다. 다만, 예술·체육계열은 [예술·체육계열 연구자 수 반영률 및 점수 기준표]와 같이 정한다)

3) 연구자수 반영률

제 5 조의2(전공심사)

② 연구실적(60점) 세부심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연구자수 반영률은 다음과 같다.

가. 단독연구 100%,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0%, 10인 이상 10%

나. 제1저자인 경우 2인 공동 80%, 3인 공동 60%, 4인 이상 40%, 10인 이상 20%(다만, 저서 및 번역서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제1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저자 배열순에 따라 제1저자로 간주하고 책자 또는 논문형태로 출판하지 않은 연구물과 게재예정은 인정 않음. 다만, 교신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신저자와 제1저자를 동등하게 인정함.

4) 학술지 반영점수, 연구실적물 질계수 및 채용분야 일치도

제 5 조의2(전공심사)

② 연구실적(60점) 세부심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6. 학술지 반영점수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5.29.>

가. 국제최우수학술지: 1편당 $[15+(\text{임팩트팩터} \times 1.5)]$ 점. 다만, 주저자(교신저자)의 경우에 한함.

나. 국제전문학술지1(SCIE, A&HCI, SSCI, Index Medicus): 1편당 $[15+(\text{임팩트팩터})]$ 점

다. 국제전문학술지2(SCOPUS): 10점. 다만, 한국연구재단 인정기준을 적용하되, 전체 영문 논문만 인정

라.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1편당 인문사회계열 10점, 이 외 계열 8점

마.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1편당 8점

바. 인문사회계열에 한하여 전공저서(ISBN 등재, 다만, 개정판·증보판 제외)는 1편당 8점으로 하며, 1편만 인정

사. 인문사회계열에 한하여 전공번역서(ISBN 등재, 다만, 개정판·증보판 제외)는 1편당 8점으로 하며, 1편만 인정

아. 예술·체육계열 실기(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에 관한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함.

자. 치의학과 임상계열에 한하여 박사학위 논문은 200%, 석사학위 논문은 100%로 인정하며,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

차. 특허: 국내 8점, 국제(미국, 유럽, 일본) 10점

7. 연구실적물의 질 계수는 A(100%), B(80%), C(60%), D(40%)로 평가한다.

8. 연구실적물의 채용분야 일치도는 A(100%), B(75%), C(50%), D(25%)로 평가한다.

5) 적용방법

기초심사 점수와 전공심사 I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배수 이내의 자에 한하여 전공심사 II (공개강좌) 평정을 계속함

4. 전공심사 II (공개강좌) (시행세칙 제5조의 2)

제 5 조의2(전공심사)

④ 공개강좌(15점)는 심사위원,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발표 30분, 질의응답 15분으로 하며, 강좌주제는 학과에서 정한다.(다만, 학과에 따라 정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심사의 평가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점)			
		A	B	C	D
발표계획의 적절성과 준비의 충실도	5점	5점	4점	3점	2점
발표의 수준 및 완성도	5점	5점	4점	3점	2점
질문의 처리 능력 및 태도	5점	5점	4점	3점	2점

5. 면접심사 (시행세칙 제5조의 3)

제 5 조의3(면접심사)

면접심사(10점)는 기초심사 점수와 전공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2배수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심사 사항과 평가 배점 및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3점): A(3.0점), B(2.5점), C(2.0점), D(1.5점), E(1.0점)
2. 인성, 품행 및 성실성(3점): A(3.0점), B(2.5점), C(2.0점), D(1.5점), E(1.0점)
3. 발전 기대성(4점): A(4.0점), B(3.5점), C(3.0점), D(2.5점), E(2.0점)

6. 합격자 결정 (시행세칙 제8조)

제 8 조(합격자 결정)

① 기초, 전공, 면접심사 결과를 합한 점수의 초빙분야별 최고 득점순위로 1, 2 순위를 결정하고 1순위자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 다만, 1순위자에 대하여 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 및 강릉원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검증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1순위자를 인사위원회에 부의 전까지 1순위자에게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1순위자 포기 시에는 채용절차를 종료하되, 총장이 학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2순위자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순위자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제1항의 임용후보자는 기초, 전공, 면접심사 결과를 합한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7.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 등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해석을 따름

[별첨 1]

【예술·체육계열[발표, 전시, 입선] 연구자 수 반영률 및 점수 기준표】

[시행세칙 제5조의2(전공심사) 관련]

<분야1> 미술, 공예조형디자인

연구업적				연구자수반영률 (%)	인정점수
가. 개인전	국제	개인전		100	6.7
		아트페어		80	4.5
	국내	개인전		100	4.5
		아트페어		80	2.9
나. 단체전	2인전	국제		60	4.5
		국내		50	2.3
	3인이상 단체전	국제	기획, 초대전	50	3.6
			회원전	40	2.3
		국내	기획, 초대전	50	1.4
			회원전	40	0.9
다. 공모전	국제	입선1회		10	0.9
		특선이상 1회		10	1.8
	국내	전국규모	입선1회	10	0.3
			특선이상 1회	10	0.5
		지역규모	입선 1회	10	삭제
			특선이상 1회	10	0.2
라. 심사	국제 공모전			10	0.5
	국내 전국규모			10	0.1
	국내 지역규모			10	삭제
마. 논문	국제전문학술지1(SCIE, A&HCI, SSCI) 1편당			일반계열 적용	4.5
	국제전문학술지2(SCOPUS) 1편당			일반계열 적용	2.7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1편당			일반계열 적용	2.7
	전공저서(ISBN 등재/개정판·증보판 제외) 1편당			일반계열 적용	3.1
	전공번역서(ISBN 등재/개정판·증보판 제외) 1편당(3편까지 인정)			일반계열 적용	1.3

- 양적심사: 모집분야와 일치하는 실적물 중 1,000%를 질적심사를 위한 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되, 불가피하게 1,000%를 초과한 실적물이 포함될 경우 해당 실적물 인정비율을 1,000%까지 맞추어 인정한다. 400% 미만 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양적심사(20점) 산출공식은 $\sum\{20점 \times (\text{제출실적물의 연구자수 반영백분율}/1000\%) \times (\text{연구실적물의 채용분야 일치도})\}$ 로 한다.
- 질적심사: 지원자가 기재한 심사우선 순위에 따라 600%까지 질적심사에 포함시키되, 불가피하게 600%를 초과한 실적물이 포함될 경우 해당실적물의 인정비율을 600%까지 맞추어 인정하며, 질적점수(40점)산출공식은 $\sum\{(\text{연구자수 반영률}) \times (\text{학술지 반영점수}) \times (\text{연구실적물의 질계수}) \times (\text{연구실적물의 채용분야 일치도})\}$ 로 하며,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 규정에 따른다.

[별첨2]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 등에 관한 지침 중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외국학위 인정 기준

제2조(임용자격) ① 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소지자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학과와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지원자 중 외국학위 인정기준표에 따른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학위를 보유한 경우
 2. 음악학과 지원자 중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에서 입상실적에 있는 경우
- ② 외국학위에 대한 학위 구분은 아래의 외국학위 인정기준표에 따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다.

< 외국학위 인정기준표 >

인정 구분	음악학과	조형예술·디자인학과
학사	-	Bachelor(BA,BFA)
학석사 통합과정	-	Diplom(독일)
석사	Master(MA, MFA) Diploma(Diplom) Postgraduate Künstlerische Aufbaustudium(독일)	DNSEP(프랑스) Master(MA, MFA) Diploma(Diplom) Aufbaustudium(독일)(공예) Abschlusszeugnis(독일) Meisterschüler(독일)(공예) Akademiebrief(독일) Domus academy(이태리)
박사	Doctor Konzertdiplom(독일) Konzertexamen(독일) Meisterklassenexamen(독일) Aufbaustudiengang(독일) Cycle de perfectionnement(프랑스)	Doctor Master2(프랑스) DEA(프랑스) Post-Diplome(프랑스) Meister(독일) Meisterschuler(독일) Aufbaustudium(독일)(미술)